

## 西獨 改正登錄 意匠法(完)

〈前號에서 계속〉

### § 10.

(1) 특허청은 특허법 § 26조(1)항 두번째 문장의 의미에서 법적으로 자격있는 者를 통하여 本法에 입각해서 절차상의 결정을 말한다. 특허청직원의 제척이나 기피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법원직원의 제척이나 기피사유에 관한 규정 § 41條 내지 § 44條 § 45條(2)항 2번째문장 § 44조 내지 § 49條를 적용한다. 제척신청이 있으면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통상 그러한 경우에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법적으로 자격있는 他특허청직원이 결정을 한다.

(2) 특허청은 어느 물품분류가 등록되고 공고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이와는 별도로 특허청은 출원인이 명기한 사항은 등록대상인 한 디자인등록부에 등재하는데, 이는 그러한 출원을 할 권리의 유무 및 그 출원에 명시된 사실의 정확성유무는 체크하지 않는다.

(3) 本法 및 § 12條 첫째 문장에 의한 적격출원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이러한 보정사항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후 2개월 이내에 보정하도록 통지를 한다. 동 보정사항이 소정기간내에 보정되면 특허청에서 당해보정서를 접수한 날자로부터 디자인이나 型의 등록출원을 한 출원일로 간주된다. 특허청은 同日字를 결정하고 출원인에게

통고해야 한다.

(4) 제(3)항에 언급된 보정사항이 소정기간내에 되지않거나 출원료가 § 8條C(2)항에 따라 소정기간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출원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청은 이 사실을 明示하여 등록을 거절한다.

(5) 특허법 § 123조 (1)항에서 (5)항, § 124조, § 126조 내지 § 128조를 준용한다.

### § 10a

(1) 본법에 의거한 절차에 관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연방특허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法律上 자격을 갖춘 3명으로 구성된 특허법원의 항고원(Appeal senate of the patent court)이 同抗告에 대한 결정을 한다. 항고를 하는때는 수수료표에 의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同수수료가 항고기간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항고제기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법 § 69조, 73조(2), (4), (5)항, § 74조 (1)항, § 75조 1항, § 76조 내지 § 80조 및 § 86조 내지 § 99조, § 123조 (1)항 내지 (5)항, § 124조, § 126조 내지 § 128조를 준용한다.

(2) 상기 (1)항에 의한 항고에 대한 상고원(Appeal Senate)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관점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고원(Appeal court)이 법률관점에 관한 항고를 하도록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특허법 § 100조(2), (3)항 § 101條 내지 § 109조, § 123조(1)~(5)항 § 124조를 준용한다.

### § 10b.

§ 10條 및 § 10條a에 의한 절차에 있어서 출원인은 의장등록부에 등록될 충분한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 114條에서 § 116조까지를 각각 적용하여 절차비용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금 납부는 Bundeskasse(연방정부기금)에 해야한다. 특허법 § 129조의 두번째문장, § 130조의 (2), (3), (6)항, § 133조, § 134조, § 135조 (1)항 첫째 문장, (2)항 첫째문장, (3)항 및 § 136조 내지 § 138조가 준용된다.

### § 10c.

(1) 다음의 경우는 디자인이나 型은 말소된다.

1. 보호기간의 종료시
2. 등록권자의 청구
3. 등록권자가 디자인이나 ㉮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의장등록부로부터 디자인이나 ㉮의 등록을 말소하는데 동의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공식서류나 공인된 서류를 말소청구서와 함께 제3자가 제출하는 경우의 제3자의 청구

(2)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여 등록권자의 말소동의를 구할 수 있다.

1. 등록된 디자인이나 ㉮이 출원시에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일 경우
2. 출원인이 출원할 권한이 없는 경우

(3) 상기 (2)항 2의 경우,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그 디자인이나 ㉮에 관한 出願을 할 권한이 있는 원고에게 非正當權利者가 한 출원의 우선권을 동일 디자인이나 ㉮의 신규출원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

#### § 11.

의장등록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출원된 디자인이나 ㉮에 관하여 특허청이 보관하는 디자인이나 ㉮의 表現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디자인 표현의 공고후
2. 등록권자가 특허청에 열람동의를 선언한 경우 그 범위내에서
3.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범위내

#### § 12.

(1) 연방 법무장관은 디자인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구로 특허청을 설치하고 그 업무를 정하며 法律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디자인이나 ㉮의 표현 형식 및 기타 요건 표면디자인이나 물품차체를 나타내는데 이용하는 次元으로서 허용되는 경우, 표현과 함께 동봉하는 설명의 내용 및 범위, 물품분류, 디자인등록부의 관리 및 구성, 디자인등록부의 등제사항 및 §7조(4)항 내지 (6)항 경우의 디자인이나 ㉮을 표현한 물품을 포함한 공고상세내용 출원료 및 디자인등록부상의 등록말소 후에 출원에 관한 표현과 함께 동봉된 물품의 취급을 위한

#### 비용 (§ 10조c)

연방법무장관은 이와같은 권한을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2) 연방법무장관은 법률에 명시규정이 없는 경우 발생비용확보를 위해 행정비용부과를 특허청에 위임하는 명령을 법령에 의해 발할 수 있다. 특히 다음의 경우 그러하다.

1. 증명서·보증서·화일열람 및 정보에 대한 수수료와 비용을 부과할 것인지의 결정
  2. 비용부담자·납부기일·선불에 대한 책임·비용면제·기간경과에 따라 행위를 할 권리의 소멸 및 비용평가절차등에 관한 규정 작성
- #### § 12a.

(1) 연방법무장관은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절차상의 개별 문제를 법령으로 中上位職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1. §7조(2)항 두번째 문장, §10條(4)항에 의한 명시사항 및 거절로 출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10조(2)항 3번째 문장에 의한 사실 발견 및 거절의 경우
3. §10조c(1)항 No. 3에 의한 말소
4. 公告되고 의장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할 물품분류에 관하여 出願인이 明示한 것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7조(8)항)
5. 구제허용 또는 本法에 의한 절차상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항고절차 (§10조a(1)항 네번째 문장)를 따르는 경우

(2) 연방법무장관은 (1)항에 의한 권한을 법률에 의한 명령으로 특허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中上位 공무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10조(1)항 2, 3번째 문장이 준용된다.

#### § 13.

§7조에 따라 디자인등록부에 디자인이나 ㉮의 등록출원을 한 당사자는 반대의 증거가 입증되지 않는 한 창작자로 간주된다.

#### § 14.

(1) §5조에 의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확포할

목적으로 디자인이나 ㄹ을 불법복제품이나 모방품을 제조하는 자나 그러한 모방품을 확보하는 자는 1년이내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된다.

(2) 이러한 위법은 기소가 있어야 논한다.

(3) 형이 선고되면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피해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선고를 요청 즉시 공고하도록 명령을 발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공고는 결정으로 정한다.

§ 14a.

(1) 不法의으로 모조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확 포함으로써 디자인이나 ㄹ에 대해 창작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자는 피해자측에 대해 방해제거의 책임을 지며 반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중당의 책임을 진다.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침해를 받은 당사자는 손해배상대신에 모방이나 확포로 침해자가 실현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익에 관한 계산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侵害한 當事者가 우연한 과실에 대해서 책임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대신에 피해자측의 손해액수와 가해자측에 발생한 이익 사이의 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他法律規定에 의한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5.

(1) 본법에 규정된 법률관계에 근거한 청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소송(디자인분쟁)은 분쟁가액에 관계없이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수개의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절차진행이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되면 법령에 의한 명령으로 1개의 법원이 디자인 분쟁을 관할하도록 할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다. 지방정부는 그러한 지역의 法律집행기관에 위임할 권한이 있다.

(3)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에서의 대리가 허용된 변호사에게 디자인분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단,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원칙은 항고법원에도 적용된다.

(4)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소송의 심문이 이루어지는 법원에서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은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케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5) 디자인분쟁에 참가한 변리사비용중 변리사 수수료표 제11조에 따른 비용전액과 변리사의 필요비용까지는 반환된다.

§ 16.

서독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자는 서독내에 거주하는 변리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本法에 의거하여 특허청이나 법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본법의 규정에 의거 보호되는 디자인이나 ㄹ의 權利를 주장할 수 있다.

선임된 변리사 및 변호사는 특허청과 법원에서 디자인이나 ㄹ에 관한 민사소송에 관하여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형의 선고도 청구할 수 있다.

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 23조의 의미에서의 재산소재지로 간주한다.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가 결정적이며 그러한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소재지로 한다.

부 록

디자인물을 위한 독일 특허청 및

연방 특허법원의 수수료(1988. 7. 1 발효)

1. 특허청 요금

요금코드	내 용	요 금 (DM)
140 000	IV디자인 등록사항	
141 000	1. 출원 절차	
141 100	a) 출원료 (§ 8조c)	
141 110	(1) 디자인 등록법 § 9조(1)항에 의한 보호기간에 대한 디자인이나 ㄹ의 출원	100.
141 120	(2) § 9조(1)항에 의한 보호기간에 대한 연합출원 (§ 7條(9)항) 매 디자인이나 ㄹ당	10.
141 121	단, 최저	100.
141 130	(3) 디자인이나 ㄹ의 표현의 공고 지연	
140 131	(i) 한개의 디자인이나 ㄹ의 출원마다	40.
141 132	(ii) 연합출원시 매 디자인이나 ㄹ마다	4.
141 133	최저	40.
141 134	(iii) 상기 141 131 내지 141 133 외에 지연청구를 위한 추가로	

141 140	(§8조c(1)항 2번째 문장) (4) 141 110 내지 141 134에 추가해서, 물품 그 자체 또는 그 일부분에 의한 표현	15	(character에 관한 法 1조(1)항 Nc.4)	
141 200	b) 표현 공고의 지연에 따른 보호연장 (§8조(2)항)	400	b) 142 100 내지 142 130의 요금에 추가하여 물품 그 자체 또는 그 일부분에 의해 표현된 쉐의 보호연장 (§7條(6)항)때 건당	400
141 210	(1) 연장 이후 첫 1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e) 연장요금 지체 납부시 142 110 내지 142 150의 요금의 추가료 (§9조(3)항 2번째문장)때 디자인 혹은 쉐당	요금의 %
141 211	(i) 하나의 독립된 디자인	100		
141 212	(ii) §8조b(2)항에 의거 보호를 청구하는 연합출원증 때 디자인당	10	3. 기타 요금	
141 213	최저	100	143 100 디자인이나 쉐의 출원인이나 권리자의 변경 등록청구	60
141 220	(2) 연장으로부터 첫 12개월이 경과 후 납부된 경우 141 211 내지 141 213의 요금에 대한 추가료 (§8조b(2)항)	요금의 20%		
142 000	2. 보호기간의 연장 (§9조(1), (2)항)			
142 100	a) 5년간의 보호기간 연장을 할때 마다 매 디자인이나 쉐당 연합출원의 경우도 같음 (§7條(8)항)			
142 110	(i) 보호기간 6차년~10차년	150		
142 120	(ii) 보호기간 11차년~15차년	200		
142 130	(iii) 보호기간 16차년~20차년	300		
142 140	(iv) 보호기간 21차년~25차년	500		

### 2. 특허법원 요금

요금코드	내 용	요금 (DM)
240 000	IV. 디자인 등록의 문제	
244 000	상소 절차	
244 100	항고제기(등록디자인법 §10조a)	
244 110	a) 개별 디자인 혹은 모델에 관한 특허청 결정에 대한 불복	200
244 120	b) 연합출원 (§7조 9 항)과 관련된 여,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	350

<공>

## (案) 工業所有權 相談室 운영 (內)

- ◎ 相談日時: 每日 10:00~16:00 (土요일은 10:00~12:00)
- ◎ 相談料: 無料
- ◎ 相談依頼者: 本會 會員企業(非會員일 경우 特請에 限함)
- ◎ 相談分野 및 範圍
  - 1) 出願·異議申請·登錄節次 및 要領
  - 2) 工業所有權紛爭의 豫防 및 事後處理
  - 3) 社內 特許管理要領·職務發明補償制度 運用方案
- 4) 工業所有權 實施輪旋 및 活用
- 5) 企業內 工業所有權專擔機構設置方案
- 6) 其他 工業所有權에 관한 諸般事項
- ◎ 結果處理
  - 1) 相談依頼會員社에 直接 回答
  - 2) 相談에 關聯되는 秘密事項은 保障되며 公開 가능한 事項은 本會 會誌 또는 文庫輯으로 刊行 配布
- ◎ 相談處: 本會 發明振興部 및 調査資料部 (557-1077~8, 568-8263·8267)

## (案) ~65回 發明教室 (內)

本會는 發明人口의 底邊擴大와 아울러 發明人들간의 어려운 問題點들을 相互討論하여 對話를 통한 發明意慾鼓吹와 優秀發明을 創出하고자 다음과 같이 7月中 第65回 發明教室을 開講코자 하오니 많은 參加바랍니다.

- ◎ 日時: 1989年 7月 8日 (土) 午後 1시
- ◎ 場所: 발명장려관(KOEX 별관 2층)(參加費 없이 教材無料 提供)
- ◎ 문의처: 韓國發明特許協會 연수부 (555-6845)